

공공기관 신·증·개축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2017. 03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본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의 개요 및 절차, 관련규정 등을 안내한 것입니다.(증축 및 개축하는 건축물은 '09.03.15부터 시행, 에너지사용량으로 기준변경은 ' 11.04.13부터 시행)

본 자료가 필요한 분이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지역응복합팀

◇ 전화 : 031-260-4685, 4687

■ 본 자료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으며, 각종 양식 등은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nrec.or.kr>

본 안내서를 많은 분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I.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 개요 .....	2
1. 개요 .....	3
2. 주요내용 .....	3
3. 세부내용 .....	16
4. FAQ .....	18
II.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 관련 규정 .....	20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집 .....	21
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및 지침 .....	23



#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 개요

---

1. 개요 .....	3
2. 주요내용 .....	3
3. 세부내용 .....	16
4. FAQ .....	18

---

# 1. 개요

## <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 >

- 공공기관이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17년, 21%)**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사업
  -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 동법시행령 제15조 : '04.03.29 시행
- ⇒ 증·개축하는 건축물은 '09.03.15부터 시행
- ⇒ 기준변경(건축비 → 에너지사용량) 시행은 '11.04.13부터 시행
- ⇒ 기준변경(연면적 강화 : 3,000㎡ → 1,000㎡) 시행은 '12.01.01부터 시행

## 2. 주요내용

### 1) 설치의무 대상기관 (법 제12조 제2항)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정부가 연간 50억원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 「국유재산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2) 건축물 용도 (시행령 제15조)(학교시설 : '08.9.10일 포함)

- 공공용 : 교정시설(군사시설 제외),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
- 문교·사회용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 상업용 : 업무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 주거용 및 기타(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발전시설('11.4.13시행) 등은 제외

### 3)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시행령 제15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2)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

해당연도	2011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
공급의무비율(%)	10	11	12	15	18	21	24	27	30

### 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의 산정기준 및 방법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2016-249호 제48조 관련)

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다음의 식으로 산정한다.

$$\text{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 \frac{\text{신·재생에너지 생산량}}{\text{예상 에너지사용량}} \times 100$$

비고)

-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이란 건축물에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총에너지량 중 그 일부를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다.
- (2)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의미 하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연간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을 보정한 값이다.
- (3) 예상 에너지사용량이란 건축물에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총에너지의 양이다.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및 예상 에너지사용량은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5조제3항에 의함

나. 예상 에너지사용량은 다음의 식으로 산정한다.

$$\text{예상 에너지사용량} = \text{건축 연면적} \times \text{단위 에너지사용량} \times \text{용도별 보정계수} \times \text{지역계수}$$

비고)

- (1) 연면적이란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 단,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 (2) 단위 에너지사용량이란 용도별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에너지의 양이다.
- (3) 용도별 보정계수란 건축물 용도별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에너지의 양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이다.
- (3) 지역계수란 지역별 기상조건을 고려한 계수이다.

< 건축물 용도별 단위에너지사용량 및 보정계수 >

구분		단위에너지사용량 (kWh/m <sup>2</sup> ·yr)	*용도별 보정계수
공공용	교정 및 군사시설	392.07	1.64
	방송통신시설	490.18	1.31
	업무시설	371.66	1.73
문교·사회용	문화 및 집회시설	412.03	1.56
	종교시설	257.49	2.50
	의료시설	643.52	1.00
	교육연구시설	231.33	2.78
	노유자시설	175.58	3.67
	수련시설	231.33	2.78
	운동시설	235.42	2.73
	묘지관련시설	234.99	2.74
	관광휴게시설	437.08	1.47
	장례시설	234.99	2.74
상업용	판매 및 영업시설	408.45	1.58
	운수시설	374.47	1.72
	업무시설	374.47	1.72
	숙박시설	526.55	1.22
	위락시설	400.33	1.61

<지역계수>

구분	지역계수
서울	1.00
인천	0.97
경기	0.99
강원 영서	1.00
강원 영동	0.97
대전	1.00
충북	1.00
전북	1.04
충남·세종	0.99
광주	1.01
대구	1.04
부산	0.93
경남	1.00
울산	0.93
경북	0.98
전남	0.99
제주	0.97

\* 용도별 보정계수는 2017년 4월 1일부터 폐지함

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다음의 식으로 산정한다.

$\text{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text{원별 설치규모} \times \text{단위 에너지생산량} \times \text{원별 보정계수}$
---

비고)

- (1) 원별 설치규모란 설치계획을 수립한 신·재생에너지원의 규모를 말한다.
- (2) 단위 에너지생산량이란 신·재생에너지원별 단위 설치규모에서 연간 생산되는 에너지의 양이다.
- (3) 원별 보정계수란 신·재생에너지원별 연간 에너지생산량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이다.
- (4) 단위 에너지생산량, 원별 보정계수는 센터의 장이 정한다. 다만, 단위 에너지생산량이 현저히 낮은 신·재생에너지원의 보정계수는 다른 신·재생에너지원 보정계수의 최대치를 초과할 수 없다.

##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017-4호 제 52조 관련)

### 〈2017.3.31. 이전기준〉

신·재생에너지원		단위 에너지생산량		원별 보정계수
태양광	고정식	1,358	kWh/kW · yr	4.14
	추적식	1,765		3.59
	BIPV	923		11.70
태양열	평판형	596	kWh/m <sup>2</sup> · yr	1.92
	단일진공관형	745	kWh/m <sup>2</sup> · yr	1.76
	이중진공관형	745	kWh/m <sup>2</sup> · yr	1.56
지열에너지	수직밀폐형	2,045	kWh/kW · yr	0.70
	개방형	2,045		0.64
집광채광	프리즘	94.7	kWh/set · yr	11.70
	광덕트	139.7		11.70
연료전지	PEMFC	9,392	kWh/kW · yr	6.35
수열에너지		2,045	kWh/kW · yr	0.62

### 〈2017.4.1. 이후기준〉

신·재생에너지원		단위 에너지생산량		원별 보정계수
태양광	고정식	1,358	kWh/kW · yr	1.56
	추적식	1,765		1.68
	BIPV	923		5.48
태양열	평판형	596	kWh/m <sup>2</sup> · yr	1.42
	단일진공관형	745	kWh/m <sup>2</sup> · yr	1.14
	이중진공관형	745	kWh/m <sup>2</sup> · yr	1.14
지열에너지	수직밀폐형	864	kWh/kW · yr	1.09
	개방형	864		1.00
집광채광	프리즘	132	kWh/m <sup>2</sup> · yr	7.74
	광덕트	73		7.74
연료전지	PEMFC	7,415	kWh/kW · yr	2.84
수열에너지		864	kWh/kW · yr	1.12
목재펠릿		322	kWh/kg · yr	0.52

주) 여기서 정해지지 않은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단위 에너지생산량과 원별 보정계수는 규정 제54조의 분야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정한다.

※ 검토기준은 신재생에너지센터-전자민원시스템 설치계획서 접수일자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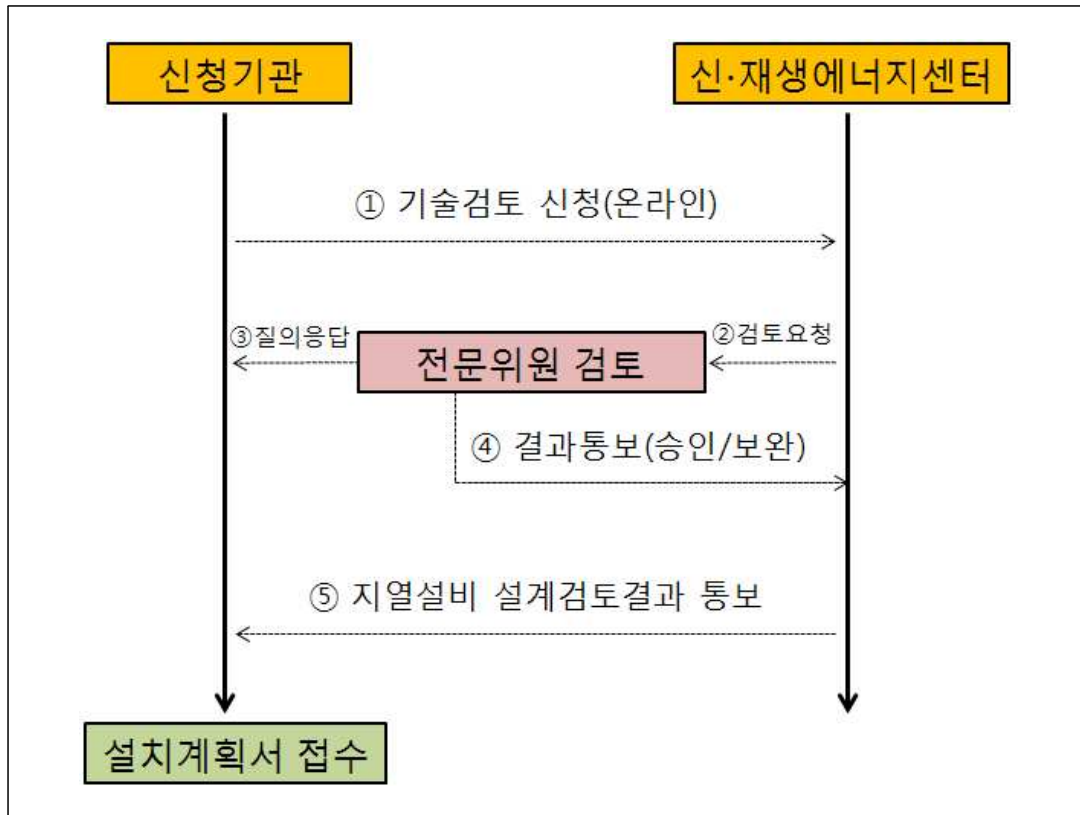
### 5)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진행절차

구분	설치의무기관	신·재생에너지센터
계획 수립	(건축허가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담당자 검토</div>
건축 설계		
건축 허가	(설치 후 30일 이내)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설치확인 (현장점검 등)</div>
시공		
사용 승인		

※ 지열설비인 경우에는 사전에 「지열이용검토서」를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열설비 설치 시에 특이사항(센터 지침 제13조 제2항)

☞ 업무처리절차 (지열이용검토 승인 후에 설치계획서 제출)



☞ 관련서류

- ① 설계요약서, 주요자재 설치사양, 기초안정성 검토서
- ② 설치계산서 : 부하계산서, 지중열교환기 설치계산서, 지열열펌프의 신재생 에너지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지열 열펌프 성능표, 지중순환펌프 설계계산서, 탱크류 및 배관계 설치계산서, 하자보수 계획서
- ③ 설계도면 : 장비일람표, 보어홀 배치도, 지중열교환기 설치상세도, 시스템 계통도, 배관 계통도, 기계실 장비 배치도, 자동제어 설계도, 냉매 배관도
- ④ 지중 열전도도 시험성적서 등

[참고]

< 설치의무화 대상건축물의 용도 분류 > (음영부분만 해당)

건축통계 자료집 용도분류	건축법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주 거 용	1. 단독주택	<p>[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p> <p>가. 단독주택</p> <p>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li> <li>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li> <li>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li> </ol> <p>다. 다가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li> <li>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li> <li>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li> </ol> <p>라. 공관(公館)</p>
	2. 공동주택	<p>[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p> <p>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p> <p>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p> <p>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p> <p>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p>
상 업 용	3. 제1종 근린 생활시설	<p>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p> <p>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나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p> <p>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p> <p>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p> <p>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p> <p>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p> <p>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p> <p>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p> <p>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p>

건축통계 자료집 용도분류	건축법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건축법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상업용	4. 제2종 근린 생활시설	<p>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p> <p>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p> <p>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p> <p>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p> <p>마. 총포판매소</p> <p>바. 사진관, 표구점</p> <p>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p> <p>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p> <p>자. 일반음식점</p> <p>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p> <p>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p> <p>타. 독서실, 기원</p> <p>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p> <p>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p> <p>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p> <p>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li> <li>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li> </ol> <p>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p> <p>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p>
	7. 판매시설	<p>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p> <p>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p> <p>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li> <li>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li> </ol>
	8. 운수시설	<p>가. 여객자동차터미널</p> <p>나. 철도시설</p> <p>다. 공항시설</p> <p>라. 항만시설</p>

건축통계 자료집 용도분류	건축법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건축법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상업용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무도장, 무도학원 바. 카지노영업소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0. 자동차관련 시설	(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농수산용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가. 축사(양장·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23. 교정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공용	24. 방송통신 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시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통계 자료집 용도분류	건축법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건축법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문 교 · 사 회 용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0. 교육연구 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뒤탈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26. 묘지관련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27.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장례시설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공 업 용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건축통계 자료집 용도분류	건축법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건축법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기 타	18.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29. 야영장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주) 음영이 들어간 「건축법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별표1]」는 설치의무화 대상 건축물의 용도임

## 6)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신청절차

### 가. 로그인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입력)  
 핸드폰 번호

**인증번호 받기**

**로그인 방법**

- 사업자등록번호는 설치의무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로그인 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핸드폰 번호 인증 후 로그인하여야 합니다.

#### 1. 화면설명

-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대상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변경), 설치면제 신청시 로그인 하는 화면입니다.

#### 2. 처리절차

- 신청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대상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자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번호 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발송 받은 인증번호를 기입하고, 인증이 완료되면 로그인됩니다.
- 인증번호를 틀리게 입력하면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 나. 신청서 작성 및 조회

#### 신청서 목록

설치의무화 신청서 조회

◻ 작성일자: 2014-01-01 ~ 2014-01-03   
 ◻ 신청 번호:    
 ◻ 신청 구분: 전체   
 ◻ 진행상태: 전체

◻ 건물명:    
 ◻ 기관명:    
    

신청번호	기관명	건물명	신청서구분	신청일자	진행상태	확인번호	변경신청

#### 1. 화면설명

- 로그인한 사용자는 기존에 신청한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신청서 목록을 조회 합니다.



## 2. 처리절차

- 신규신청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는 설치계획 신청인 경우 **설치 계획서 작성** 버튼을, 설치 면제 신청인 경우 **설치 면제 신청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 설치계획서를 변경하고자할 경우 기존에 검토 완료된 설치계획서의 우측에 있는 **변경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내용을 작성합니다.
- 작성일자를 조정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해당기간에 작성 및 신청한 신청서 목록이 조회됩니다.
- "신청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신청서 화면으로 이동하여, 신청내용을 보여줍니다.
- "진행상태"가 '보완요청'인 경우 해당 설치계획서의 '서류검토' 탭을 클릭하면 보완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항목설명

- 신청번호 : 신청서 신청시 생성되는 번호로서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시스템에서 자동생성 됩니다.
- 신청서구분 : 설치계획, 설치변경, 설치면제로 구분됩니다.
- 신청일자 : 신청서를 공단에 온라인 제출한 일자입니다.
- 진행상태:
  - 작성중 : 신청인이 온라인상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으로서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 상태입니다.
  - 신청 : 신청인이 온라인상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서, 추가로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적정, 부적정, 보완요청 : 공단 담당자가 신청인이 작성한 신청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판단한 상태이며, 설치계획(변경)인 경우는 [적정, 보완요청]으로 표시되고, 설치면제 신청의 경우에는 [적정, 부적정]로 표시됩니다.
  - 결재진행중 : 공단 담당자가 해당 신청서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결재대기중인 상태입니다.
- 확인번호 : 해당 신청 건에 대한 검토결과서가 나올 경우 공단에서 고유번호 부여

## 4. 주의사항

- 진행상태가 **작성중/보완요청**인 경우 작성된 내용을 수정·보완 할 수 있습니다.

### 3. 세부내용

#### 1) 설치계획서의 제출 (시행령 제17조)

-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설치의무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산업통상부장관은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설치의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온라인신청 :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http://www.knrec.or.kr)) → 전자민원 → 설치의무화

##### ☞ 확인사항

- 공급의무비율 적용기준은 설치계획서 접수일자에 따라 정해지므로 설치계획서 신청시 해당 건축물의 공급의무비율 이상 충족여부 확인

#### 2) 설치계획서 검토 방법

- 설치계획서 서류검토 : 설치계획서의 관련 규정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첨부서류 등 신청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 검토사항

-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상건축물 부합여부
-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산정이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합 여부
- 고시 제48조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의 충족 여부

### 3) 설치의무 면제대상 건축물 (산업부 고시 제2016-249호 제46조 제1항)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면제되는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대상 건축물 여부를 확정한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주변시설의 안전에 현저히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사용목적이 일반 건축물 용도와 다른 경우
  3.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연속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4. 기타 입지조건외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설치면제 또는 조건부 면제가 타당하다고 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4) 설치확인 신청서 제출 (시행령 제18조)

-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센터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센터의 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설치확인을 완료하여야 한다.

※ 문의사항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Tel : 031-260-4685,4687(지역응복합팀), 4692(설치확인팀)

☞ 확인사항

- 설치계획서 승인 내역과 실제 시공내역의 일치여부 및 시공기준 충족여부

## 4. FAQ

### ○ 설치계획서는 언제 제출해야하나요?

☞ 설치계획서 제출은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합니다.

### ○ 설치의무화 공급의무비율 적용기준은?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의 관한 규정 제47조(설치계획서 검토기준)에 따라 설치계획서는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http://www.knrec.or.kr))-전자민원을 통한 신청서 접수일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 설치의무화 대상건축물의 판정과 관련하여 숙박시설(호텔, 800㎡)과 근린 생활시설(1,300㎡)을 복합용도로 건축하는 경우 설치의무화 대상 해당 여부

☞ 복합건축물(주용도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의무화 대상용도의 건축물로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위 질의내용의 건축물은 전체 연면적이 1,000㎡가 넘지만 근린생활시설(1,300㎡)은 의무화 대상 용도가 아니므로 이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의무화 대상용도인 숙박시설의 연면적으로 대상여부를 판단하여 1,000㎡(용도별 비율에 의한 기계실 등 공용면적 포함) 미만이므로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 ○ 연면적이 2,000㎡인 건축물에서 업무시설 용도가 800㎡, 판매시설이 800㎡, 기타시설이 400㎡일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대상 해당 여부

☞ 업무시설, 판매시설 및 기타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일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 대상여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용도에 해당되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또는 바닥면적)의 합에 의해 판단합니다. (용도별 연면적의 합계에서는 용도별 비율에 의한 기계실 등 공용면적 포함) 따라서,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이 각기 800㎡로서 개별적으로는 1,000㎡ 이하라 할지라도 두 용도의 합이 1,000㎡ 이상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대상에 해당됩니다.

#### <추가해설>

단, 각 용도별 연면적을 산출할 경우, 각 용도 공용으로 설치되는 기계실,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은 각 용도별 연면적 합계의 비율에 의하여 나누어 해당 용도별 연면적에 합산하여 산출해야합니다.

○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대상건축물의 판정을 위한 연면적의 산정시 주용도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부속용도도 포함되는지의 여부

☞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써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 각 목에 해당되는 용도를 말하는 것으로, 연면적의 산정에는 주용도와 부속용도의 면적을 합한 면적을 의미합니다.

○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대상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시, 동일대지내 같은 용도의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 동별 연면적을 합하여 산정하는지 여부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건축물 용도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경우 각 동 연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이면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대상건축물입니다.

○ 연면적의 계산시 주차장 또는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는지 또는 제외되는지의 여부

☞ 해당 건축물이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에 있어서의 연면적은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며, 지하층 면적과 건물내 주차장 면적을 포함합니다. 단, '11.4.13 이전 건축공사비 계산에서는 주차용 면적을 제외한 것을 사용합니다.

○ BTL, BTO, BOT 등 민간투자사업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대상 여부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해당이 되는데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체만 설치의무화에 해당됩니다.

○ 집단에너지이용과 신·재생에너지이용의무화의 관계

☞ 「집단에너지사업법」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각각의 목적과 취지가 상이한 바, 집단에너지사용과 관련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 적용 기준에 따라야합니다.

## II

#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 관련 규정

-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집 ..... 21
  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및 지침 ..... 23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집

法 律	施 行 令
<p><b>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b>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 2015.1.2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li> <li>2. 공공기관</li> <li>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li> <li>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li> <li>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li> <li>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li> </ol>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전문개정 2010.4.12.]</p>	<p><b>제15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b>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 기능, 설계 조건 또는 시공여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별표 2에 따른 비율 이상</li> <li>2. 제1호 외의 건축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li> </ol> <p>② 제1항제1호에서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되, 하나의 대지(垆地)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신·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보급과 기술개발의 촉진 및 산업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13.3.23.&gt;</p> <p>[전문개정 2010.9.17.]</p> <p><b>제16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b>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란 연간 50억원 이상을 말한다.</p> <p>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납입자본금의 100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li> </ol>

2.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전문개정 2010.9.17.]

**제17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설치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설치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17.]

**제18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①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확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반영하였는지 확인한 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설치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17.]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 249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및 제 27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여 시행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 제5장 사업별 시행기준

##### 제7절 설치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제44조(설치의무기관 및 설치여부 확인 등) ①설치의무기관은 영 제15조제1항제1호 [별표 2]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이하 “공급의무 비율”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설치의무기관의 의무대상 건축물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한 후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그 중 최근 5년간 신축, 증축 또는 개축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여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의무기관에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출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예산서 등 증빙서류
2. 납입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 등 증빙서류
3. 기타 설치의무기관의 건축물이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45조(설치계획서 제출 등) ①설치의무기관의 장은 건축허가 신청 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검토서(이하 “검토서”라 한다)를 설치의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검토서를 받은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건축허가신청서에 검토서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신청 시 제2항의 검토서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에게 제2항에 따른 검토서 내용의 반영여부 등을 확인시켜야 한다.

제46조(설치의무 면제대상 건축물 등) ①영 제15조제1항제1호 괄호단서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면제되는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대상 건축물 여부를 확정한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주변시설의 안전에 현저히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사용목적이 일반건축물의 용도와 다른 경우
3.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연속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4. 기타 입지조건외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설치면제 또는 조건부 면제가 타당하다고 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설치의무 면제를 받고자 하는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면제신청서(이하 “면제신청서”라 한다)를 건축허가 신청 전에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면제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5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확정된 후 제1항의 신청자에게 확정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검토서를 받은 제1항의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제45조제3항을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설치의무기관의 장은 건축허가권자에게 제3항에 따른 검토서 내용 등을 확인시켜야 한다.

제47조(설치계획서의 검토기준) 설치계획서는 접수일자 기준으로 검토하며,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기관은 건축허가일 기준으로 검토한다.

1.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상건축물 부합 여부
2.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산정이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합 여부 및 설비인증 만료 여부
3. 제48조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충족 여부

제48조(공급의무 비율의 산정기준과 방법) 영 제15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의 산정기준 및 방법”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7 - 4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제1항에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 위탁된 사무와 세부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개정·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5일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 제8절 설치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

- 제50조(설치계획서 제출 및 처리) ①설치의무기관의 장은 고시 제45조에 따라 [별지 제58호 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고시 제45조제2항에 따른 설치계획서 검토절차는 [별지 제58-1호 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검토절차」를 따른다.
- ③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설치계획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시 제47조에 따라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지 제59호 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검토결과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설치계획서의 내용 중 건축물 연면적, 예상에너지사용량, 설비용량 등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 ⑤제4항과 관련하여 승인된 설치계획서 상의 설비용량 증가가 10% 미만일 경우에는 설치계획서를 자체변경할 수 있다. 다만, 설치확인 신청시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⑥센터의 장은 필요할 경우 설치의무기관의 장에게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제3장을 따른다.

**제51조(설치의무 면제신청 및 처리)** ①고시 제46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면제 신청서(이하 “면제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60호 서식]에 의한다.

②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면제신청서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지 제61호 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면제신청 검토결과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단위에너지 및 원별 보정계수)** 고시 [별표 2]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공급비율 산정을 위한 단위에너지 및 원별 보정계수는 [별표 10]과 같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원별보정계수”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0]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원별보정계수

신·재생에너지원		단위 에너지생산량		원별 보정계수
태양광	고정식	1,358	kWh/kW·yr	1.56
	추적식	1,765		1.68
	BIPV	923		5.48
태양열	평판형	596	kWh/ m <sup>2</sup> ·yr	1.42
	단일진공관형	745	kWh/ m <sup>2</sup> ·yr	1.14
	이중진공관형	745	kWh/ m <sup>2</sup> ·yr	1.14
지열에너지	수직밀폐형	864	kWh/kW·yr	1.09
	개방형	864		1.00
집광채광	프리즘	132	kWh/ m <sup>2</sup> ·yr	7.74
	광덕트	73		7.74
연료전지	PEMFC	7,415	kWh/kW·yr	2.84
수열에너지		864	kWh/kW·yr	1.12
목재펠릿		322	kWh/kg·yr	0.52

주) 여기서 정해지지 않은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단위 에너지생산량과 원별 보정계수는 지침 제55조의 분야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정한다.